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11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독산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사인력 보강 및 2050 탄소중립의 전방위적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1,204명에서 1,208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: 1,172명 → 1,176명 (증4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 - 총 계: 1,204명 → 1,208명 (증 4)
 - 일반 직 계: 1,197명 → 1,201명 (증 4)
 - 일반 5급 계: 53명 → 54명 (증 1)
 - 6급 이하 계: 1,133명 → 1,136명 (증 3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2024년 상반기 독산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사인력 1명 보강 및 2050 탄소중립의 전방위적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집행기관의 정원 1,172명 → 1,176명으로 4명 증원하여 총 정원은 1,204명 → 1,208명으로, 일반직은 1,197명 → 1,201명, 일반 5급은 53명 → 54명, 6급이하는 1,133명 → 1,136명으로 조정하는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제2항」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타 자치구 보건지소 운영현황

3. 타 자치구 탄소중립 관련 팀별 인원현황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2. 4. 19.] [대통령령 제32581호, 2022. 4. 19., 일부개정]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붙임 2

타 자치구 보건지소 운영현황

연번	자치구	현황(직렬 및 정원 등)	지소 세부사항	비고
1	광진구	총14명(행정3, 간호4, 물리치료1, 운전1, 임기제5)	중곡 및 자양보건지소	
2	중구	총20명(행정5, 보건2, 물리치료2, 간호8, 임기제3)	다산, 약수, 황학, 중림 보건지소 등 4개 지소	보건지소과로 운영
3	중랑구	총6명(행정2, 간호2, 임기제2)	상봉보건지소	상봉보건지소
4	성북구	총22명(행정4, 간호1, 물리치료1, 운전1, 임기제13)	동선, 정릉, 장위석관지소 등 3개지소	
5	도봉구	총13명(행정2, 간호4, 운전1, 임기제6)	주민센터 건물 1, 4층	창동보건지소
6	노원구	총15명(행정2, 물리치료1, 약무1, 간호4, 사무운영1, 임기제6)	지상1층~지상4층	월계보건지소
7	노원구	총4명(행정2, 간호2)	지하1층~지상4층	공릉보건지소
8	노원구	총5명(행정2, 간호2, 임기제1)	주민센터 3층	상계보건지소
9	노원구	총4명(행정1, 간호2, 임기제1)	지상1층~5층	마들보건지소
10	서대문구	총7명(행정2, 의무1, 간호2, 운전1, 임기제1)	주민센터 3~4층	가좌보건지소
11	양천구	총7명(행정3, 물리치료1, 간호2, 시설관리1)	신월 및 목동보건지소팀	팀으로 운영 (팀장:행정직)
12	동작구	총10명(행정3, 의무1, 약무1, 간호5)	4층 1개층	
13	관악구	총12명(행정2, 물리치료1, 의무1, 간호4, 임기제4)	보건지소팀+보건분소팀	
14	서초구	총10명(행정4, 임상병리1, 방사선1, 간호3, 임기제1)	2층 658.29㎡	방배보건지소
15	서초구	총6명(행정2, 간호3, 임기제1)	지상1층 504㎡	서초보건지소
16	강남구	총11명(행정2, 간호5, 임기제4)		세곡보건지소
17	송파구	총32명(행정4, 보건1, 물리치료1, 간호16, 운전1, 임기제9)	1~5층	

자치구	총인원	관련 팀별 인원현황
금천구	6	기후변화대응팀(6)
동대문	10	환경행정팀(5), 기후변화대응팀(5)
노원	9	탄소중립정책팀(5), 지속가능팀(4)
도봉	9	기후변화대응팀(5), 환경교육팀(2), 환경관리팀(2)
서대문	11	환경행정팀(6), 기후위기대응팀(5)
광진	8	환경정책팀(4), 기후변화대응팀(4)
서초	10	환경정책팀(9), 에너지관리팀(1)
중랑	11	녹색성장팀(11)
영등포	9	환경행정팀(9)